

가스설비공사협의회 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개정 안내



가스설비공사협의회(위원장 이효련)는 지난 1월 25일 가스시설시공업 회원사에게 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개정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.

최근 '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' 중 사용자 공급관에 대하여, 전공정 시공감리에서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시공감리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한 결과 -26.2%의 수수료를 삭감시켰다.

이에 따라 가스시공업계는 약 15억여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시공감리수수료 산출지침 개정

▶ 추진배경

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는 사용자공급관의 시공감리수수료를 전공정 감리에서 일부공정 감리로 법이 개정되었기에, 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시공감리수수료를 인하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협의한 끝에 -26.2%를 삭감하였음

시공감리 수수료 개정 전·후 비교표

현 행				개 정 (안)				
제4조(시공감리수수료) 제3조의 산출방법에 의한 시공감리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. (단위 : 원)				제4조(시공감리수수료) 제3조의 산출방법에 의한 시공감리수수료는 아래 표와 같다. (단위 : 원)				
		대상	금액			대상	금액	증·감
배 관	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배관	길이 20m이하	8만3천5백원	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배관	길이 20m이하	9만2천9백원	△11.25%	
		길이 20m초과	8만3천5백원에 20m를 초과한 매 10m마다 4만1천7백원을 가산한 금액		길이 20m초과	9만2천9백원에 20m를 초과한 매 10m마다 4만6천4백원을 가산한 금액 사용자		
	사용자 공급관	길이 500m이하	26만8천원	사용자 공급관	길이 500m이하	19만8천원	-26.2%	
		길이 500m초과	26만8천원에 500m를 초과한 매500m마다 25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단, 제3조 제2항의 가산금을 제외하고 257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		길이 500m초과	19만8천원에 500m를 초과한 매500m마다 19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. 단, 제3조 제2항의 가산금을 제외하고 198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		
				부칙 1.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0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이 지침 시행전에 신청한 시공감리 수수료는 이 지침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 3. 시공감리수수료는 정부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매년 1월을 기준으로 하여 개정한다. 4. 법·고시 등의 상위규정이 개정될 경우 이 지침 제1조제2조의 관련조문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.				